〈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6sungfood@naver.com

등록번호 : 20240757 최초 등록일 : 2024 . 06 . 03

최종 등록일 : 2024 . 12 . 05

탄광촌 닭갈비

정 보 공 개 서

육성푸드 주식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육성푸드 주식회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802,809,810, B112, B113호(문래동5가, 하우스디 비즈)

[대표 전화번호] 1566-3952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운영지원팀 1566-3952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 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 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Ι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탄광촌 닭갈비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802,809,810, B112, B113호(문래동5가, 하우스디 비즈)				
육성푸드(주)	til 설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 <u></u>	-) 대표팩스번호
2019.11.14	1	2019.11.14	조성욱	1566	5-3952	02-863-1525	
	법인등록번호 110		111-7292595	사업자등록	H번호	42	4-87-01531

2.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802,809,81		
 대표이사	고성욱 고등이자 조성욱	탄광촌닭갈비	B112, B113	3호(문래동5가, 하	우스디 비즈)
91377 174	육성푸드(주)	외 2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성욱	1566-3952	02-863-152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사내이사 +	조병욱	ㅈㅂㅇ 팔각도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66-1, 1층				
가맹점 운영)	,	목동본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3台 でる/			조병욱	02-6053-8883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가지 손정희 탄광촌닭갈비		서울시 영등포	.구 선유로3길 10,	802,809,810,
감사			B112, B113	3호(문래동5가, 하	우스디 비즈)
70/1	육성푸드(주)	외 2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성욱	1566-3952	02-863-152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백두신 계열회사 리아	(즈)배드사크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8층 802호(문래동5가, 하우스디 비즈)			
		호랭이 반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조성욱	1566-3952	_	
	법인등록번	호 110111-	-8730742 사업	검자등록번호	775-86-02862	

3.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탄광촌 닭갈비	
상 호	탄광촌 닭갈비 OO점	
상표(서비스표)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540,644	221,588	319,056	1,752,606	234,734	216,613
2022년	3,960,956	2,254,207	1,706,749	11,240,610	1,596,838	1,417,693
2023년	8,111,204	3,562,142	4,549,061	32,243,241	3,992,717	3,342,312

- 그 근거자료는 별첨[재무현황]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원인역구 의급 		기간	직위	담당 업무
		2023.05~현재	육성푸드(주) 대표이사	사업 총괄
		2019.11~2023.05	육성푸드(주) 사내이사	업무 지원
	조성욱	2015.11~2022.12	특돼지 목동점	점포 운영
	7.9.7	2023.08~현재	㈜백두산코리아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24.05~현재	비에스테크㈜ 사내이사	경영지원
		2024.07~현재	육성에프앤비㈜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19.11~2023.05	육성푸드(주) 감사	감사
가맹사업		2023.05~현재	육성푸드(주) 사내이사	업무지원
관련 임원	ス出ら	2023.05~2024.05	비에스테크㈜ 사내이사	경영지원
	조병욱	2024.05~현재	비에스테크㈜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23.08~현재	㈜백두산코리아 사내이사	경영지원
		2024.07~현재	육성에프엔비㈜ 사내이사	경영지원
		2023.05~현재	육성푸드(주) 감사	감사
	손정희	2023.05~현재	비에스테크㈜ 감사	감사업무
	[근경의	2023.08~현재	㈜백두산코리아 감사	감사업무
		2024.07~현재	육성에프앤비㈜ 감사	감사업무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니저	임원-	수(명)	지의스/며\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2	1	39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팔각도 목동본점/조병욱	가맹점 운영	2019.12.10~ 현재	팔각도 가맹점 등록번호 20200724
육성푸드 ㈜	새로이	가맹본부 (삼겹살)	2020.12.24. ~ 현재	등록번호 : 20210505
특수관계인	팔각도 신도림역점/조보 미	가맹점 운영	2021.11.09. ~ 202 4.07.31.	팔각도 가맹점 등록번호 20200724
육성푸드 ㈜	팔각도	가맹본부 (닭구이)	2019.11.14. ~ 현재	등록번호 : 20200724
특수관계인	(주)백두산코리아	계열회사 (중식)	가맹사업 시작 예정	호랭이 반점 등록번호 : 20240932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의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아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가맹사업 시작 예정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탄광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육성푸드(주)		조성욱	가맹사업 시작 예정	802,809,810, B112,
	닭갈비			B113호(문래동5가, 하우스디 비즈)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탄광촌 닭갈비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닭고기, 닭갈비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TICH	í	2021.12.31		í	2022.12.3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_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1	-	-	-	
전북	-	_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_	-	-	-
2022	-	-	_	-	_	-
2023	-	-	-	-	-	-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최근 3년 동안)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당	맹점/직영점의	수
下世	· 6오/이금	6 남표시	등록번호	ПО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육성푸드(주)	팔각도	20200724	한식	18/-	72/-	181/-
가맹본부	육성푸드(주)	새로이	20210505	기타 외식	1/-	-/-	-/-
특수관계인	(주)백두산코	호랭이 반점	20240022	죄	,	,	,
(계열회사)	리아	오뎅이 면접	20240932	중식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년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 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ш¬
 지역	2023년말	연간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		연간평균매결	불액(하한)	비고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	_	-	-	-	-	-
서울	-	-	-	-	-	-	-	5곳 미만
부산	-	-	-	_	-	_	-	5곳 미만
대구	-	-	-	_	-	-	-	5곳 미만
인천	-	-	-	-	-	-	-	5곳 미만
광주	-	-	-	-	-	-	-	5곳 미만
대전	-	_	-	_	-	-	-	5곳 미만
울산	-	-	-	-	-	-	-	5곳 미만
세종	-	-	-	-	-	-	-	5곳 미만
경기	-	-	-	-	-	-	-	5곳 미만
강원	-	-	-	-	-	_	-	5곳 미만
충북	-	-	-	-	-	-	-	5곳 미만
충남	-	-	-	-	-	-	-	5곳 미만
전북	-	-	-	-	-	-	-	5곳 미만
전남	-	-	-	-	-	-	-	5곳 미만
경북	-	-	-	-	-	-	-	5곳 미만
경남	-	_	_	-	-	-	-	5곳 미만
제주	-	-	-	-	-	-	-	5곳 미만

8. 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	-
------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전년도 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광고	(비공개)	2023.1.1.~12.31	-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 대신 아래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기관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육성푸드(주)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1]개월 소요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 당사와 임원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아래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외비용:점포임대관련 비용]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피해보상보험으로 처리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피해보상보험으로 처리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11,000	가맹계약 체결 후 피해보상보험증권 발행 직후	가맹사업법상 반환사유	가맹계약서에 따름	가맹계약서에 따름
교육비	5,500	가맹계약 체결 후 피해보상보험증권 발행 직후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실비적 성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총계	16,500				

[※] 상기의 가맹비는 최초 가맹계약 당시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대가, 노하우제공, 자료 제공의 대가, 기타 개업지원 대가입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보증금	2,000	가맹계약 체결 후 피해보상보험증권 발행 직후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미수금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비	11,000
교육비	5,500
(현금)보증금	2,000
합계	18,500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 대신 상기 금액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기준: 실평수 82.5㎡[약 25평]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주방설비, 집기	가맹본부	10,000	400	가맹계약 체결시	공사/ 공급일 3일전	
가스로스터 세트	가맹본부	1,950	78	가맹계약 체결시	공사/ 공급일 3일전	자체제작 가스로스터세트
인테리어	협력업체	14,950	598	별도계약	-	3.3m ² 늘어날 때마다 598천원추가부담
간판/사인	협력업체	5,000	200	별도계약	-	가로6M기준
의탁자	가맹본부	5,500	220	가맹계약 체결시	공사/ 공급일 3일전	10개 테이블
초도물품	가맹본부	3,300	132	가맹계약 체결시	공사/ 공급일 3일전	유니폼, 명함, 인쇄물 등(식자재제외)
총계		40,700	1,628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점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별도비용 :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내부덕트, 외부덕트,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 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의 설계 및 인테리어 노하우제공의 대가로 평당 금 **330천원**(부가세 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이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울/경기권을 제외한 지역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해 (10)%의 추가 경비가 발생됩니다.(제주 및 도서지방은 협의).

※ 약 82.5m²(실평수 약25평) 미만의 가맹점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최소 약25평 상당의 설비가 필요하므로 약 25평에 해당하는 설비비용이 발생합니다.

※ 상기 지정업체나 협력업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고지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희망자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정					
가맹점사업자	※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부가세가 포함된 월매출 X 2.2%(VAT포함)	다음 월 5일	후불로 반환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필요시 실비청구	교육 실시 10일 이전	미 시행시 반환	시행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지정업체(미정)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Ⅶ.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지정업체(미정)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VII.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교체.보수비용			부담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없음	
POS 사용료	지정업체 (미정)	매월 약정금액	약정일 지급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재계약 가맹비	해당없음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 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 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나 권리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맹사업 상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가맹본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제시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도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간판, 점포 내.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 터 등 영업표지와 관련된 시설을 교체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 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와 계약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귀하는 지체 없이 당사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가들어간 내부 시설물, 기자재, 상품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당사에 반환하는 등 원상복구 책임을 다합니다.
- ② 당사는 위 제1항의 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미지급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과 원상복구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 후 귀하에게 이를 반환합니다.
- ③ 위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비용은 귀하가 부담하되, 당사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 ④ 계약의 종료 과정에서 계약 종료일 또는 상호 약속한 날까지 귀하가 위 제1항의 영업표지 제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위의 영업표지 제거한 후 남은 계약이행보증금의 잔액을 귀하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 종료일까지 귀하는 당사가 제공한 메뉴 및 운영 매뉴얼 및 기타 본사에서 지급받은 가맹점 운영에 관계된 문서와 설비 등을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 ⑥ 귀하는 계약의 종료시점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정산하여 반환하기 전, 서로 합의된 날짜까지 사업자 등록증의 폐업은 물론 포털의 지도검색 삭제와 매장 전화번호 삭제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순번	프 모/다이\	공급가격	공급가격(단위:원)		
군인 	품목(단위)	상한	하한	구분	
1	해당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단위;원)	비고
	해당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2023년 기준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 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2023년 기준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 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1회 위반: 구두 경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별첨[공급상품	기재된 제품은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소비자 외 제3자	리스트] 참조	판매할 수 없음	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변경시 사전 통보	2024. 04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 글인 법중 급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물닭갈비, 철판닭갈비 전문점(배달포함)	탄광촌 닭갈비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500m를 원	
칙[영업지역 내에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및 병원 등 대규모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
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일 것)와 역사(기차, 지하철)및	서도 걸음이 따르 정구 계급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공항의 시설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영업지역에서 제외]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 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 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 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 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 해당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 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ا ا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B, 아니오→®	D-16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D-00월 역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	•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관련 계약조문 45조

-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가맹점사업 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 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함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관련 계약조문 46조 1항

- ① "본사"의 승인 없이 임의대로 가맹점을 양도, 상속, 전대를 하거나, 가맹계약에 명시된 업종 이외의 영업활동 및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② "본사"의 승인 없이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인을 바꾸거나, 실제 운영주체가 바뀌는 경우
- ③ 제50조 (경업금지)을 위반하는 경우
- ④ "본사"에 대한 미수금액이 발생하여 2회 이상 지정날짜까지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

- ⑤ 가맹계약기간 중 "본사"에 대한 채무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를 넘어 지정된 날짜까지 계 약이행보증금의 원금을 복원하지 못하는 경우
- ⑥ 제38조 (가맹점 운영과 판매·영업의 표준화) 1호, 3호, 7호, 8호에 관하여 "점주"가 부당하 게 그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본사"로부터 2회 이상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 ⑦ 공급받은 원부자재 관리소홀과 위생상태 불량으로 2회 이상 "본사"나 외부 기관에게 지적을 받는 경우
- ⑧ 계약내용, 운영방침, 매뉴얼에 대한 "점주"의 불이행이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 ⑨ "점주"가 제30조 (판매상품의 준수와 변경) 1호를 위반하여 "본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 상품의 명칭을 바꾸거나 레시피를 수정하여 허락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⑩ "점주"가 제31조 (권장가격의 준수와 변경) 1호를 위반하여 "본사"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 의대로 가격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경우
- ⑪ 조리매뉴얼, 판매 및 영업방식, 고객 서비스(고객과 대면 접촉에서 발생하는 모든 언어적 시 각적 서비스 행위. 유니폼 착용 등도 포함) 등의 미준수 또는 불량으로 "본사"로부터 개선조치를 2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 ⑫ "점주"가 제29조 (자점 매입금지)을 위반하여 사입을 통해 제3자와 거래한 경우
- ⑬ "점주"가 "본사"가 지정하지 않은 원·부재료 등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⑩ "점주"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의 훼손과 가맹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자신의 가맹점에만 국한된 일방적 요구나 이익제공을 "본사"에게 요구하여 "본사"가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경우
- ⑤ "점주"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등의 교육과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본사가" 실시하 는 교육, 훈련, 경영지도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 ⑥ 가맹계약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 불만의 소리가 접수되어 "본사"가 이를 시정해 줄 것을 2회 이상 권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무시 또는 거부하며 시정을 하지 않 는 경우
- ⑰ 고객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끼쳐 그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 ® 제38조 (가맹점 운영과 판매·영업의 표준화)의 4호, 7호, 8호와 관련하여 "점주"가 표준적인 월 운영일과 일 운영시간에 대해 "본사"의 승인없이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단축시키는 경우

⑩ "점주"가 "본사"와 협의 없이 가맹점을 3일 연속 개점하지 않거나 "점주"가 연락두절로 "본사"

- 할 만하면서 한 반하시면에 데에 는지 그 하면없이 마다네고 만하시기 만족시키는 하는
- 의 공지사항의 전달이 2주 이상 불가능 또는 공문의 서류가 2회 이상 반송되어서 오는 경우
- ⑳ "본사"가 진행하는 광고와 판촉행위에 대해 대금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
- ② "점주"가 점포환경개선에 대해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 ② "본사"의 노하우, 영업비밀, 가맹사업에 중요한 사안들, 가맹본부에 관련된 정보를 "본사"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을 하는 경우
- ② "점주"가 제3자나 다른 가맹점과 접촉하여 해당 가맹사업의 중요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가맹사업 및 운영에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얘기로 "본사"의 명성을 훼손하는 경우
- ② "점주"가 "본사" 동의없이 영업표지를 허용된 사용범위 이외에 사용하거나 점포의 간판, 인테리어, 시설 및 장비를 "본사"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추가, 삭제, 변경하는 경우

- ③ "점주"가 제39조 (포장과 배달 판매·영업활동)의 3호, 4호, 6호, 7호, 8호, 9호, 10호를 위반하는 경우
- ❷ "점주"가 제40조 (복장, 품위유지, 고객서비스)의 4호를 위반하는 경우
- ② "점주"가 "본사"의 임원과 직원, 그리고 협력업체 등에게 비정상적인 요구나 폭언, 협박, 위협, 비인격적 대우 등의 언행을 하거나 문자, SNS, 이메일 등을 통해 그들에게 유사한 행위를 하여 "본사"에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 ☞ 제33조 (POS 등 설비 및 기기) 1호를 위반하여 "점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사"가 지정한 POS 등 설비 및 기기를 구비하지 않거나 "점주"의 상황으로 개별 POS 사용 시 제41조(회계·매출자료 작성과 열람, 주요 보고의무)의 4호, 5호, 7호를 위반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계약조문 46조 2항 [즉시계약 해지 사유]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 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 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 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매저 으여 기즈은 즈스하 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 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관리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 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 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		

[※]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탄광촌 닭갈비]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물닭갈비, 철판닭갈비를 판매하는 외식업 (배달포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관리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6:00 ~ 23:00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	월 28일(2월은 25일) 이상 영업일 준수	문의: 운영지원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사	지저 그ㅁ	전조이 배으자 지계가조 	점주의 부재시
2명 이상	식섭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점포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점포운영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각 지역 가맹관리팀	통상 QSC 관리
회계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자료 요청 → 회계자료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각 지역 가맹관리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이상 동의→ 가맹점의 행사 참여	사전동의절차 준수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등

	가맹점	전액 부담	없음		(전국 또는
	모집광고		W D		지역별 행사)
판촉행 사	할인행사 등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사전동	
	개별판촉	-	가맹점이 부담	-	-
제휴 서비스	제휴행사	따른 사전약 동의절차 시 형	12조의6제1항에 정서 체결 또는 방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제휴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4조 (판촉)

개별 "점주"가 스스로 또는 다른 "점주"와 함께 "본사"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질성이확보되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나, 행사 전 "본사"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그러한 경우 해당 "점주"는 그 광고, 판촉의 형태, 방식, 인쇄 및 전단 판촉물에 대해 행사 전"본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 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9조

- 1. "점주"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본사"의 매뉴얼,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허가 없이 인쇄, 복사, 대여, 공개해 서도 아니 된다.
- 2. "점주"는 "본사"의 허락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과 가맹계약 종료 후에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본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맹계약 해지, 종료 시에는 반드시 "본사"에서 제공받은 모든 문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계약해지·종료 시 귀책사유 있는 자가 가맹계약서 제47조 제1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 상대 방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원)의 위약벌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고 실제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 가맹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귀하가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귀하는 계약 해지 시점부터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50조제2항(경업금지)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하는 해당 손해를 당사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⑤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49조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⑥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7조 제1항,(원·부자재, 물품, 상품), 제29조 제1항(자점매입금지) 을 위반 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해당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⑦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⑧ 당사 또는 귀하의 지급요청일에 각 상대방이 지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체하거나 정보공 개서 및 가맹계약서, 기타 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⑨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서 제52조 제①항 내지 제⑦항에 의한 손해배상 이외에 다른 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7페이지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계약 1일 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계약체결 당일	7페이지 참조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일	8페이지 참조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약 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7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보공 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 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 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 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의 자문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2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수령 후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 가맹사업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2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 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유	ㅇ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
	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o간판교체 비용
비용항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
	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비용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
제외사유	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
	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촉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해당없음				
무상대여	예정했급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차후
CRM	해당없음	진행시
테스터	해당없음	사전협의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 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 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 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 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관리 팀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 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 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 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 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 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 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문의: 가맹관리 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점포운영, 기기사용법, 발주 및 입금 방법 등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전까지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상품, 서비스 강화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통지 후 7일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7일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필요시 실시	실비수준 청구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수시교육은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실비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사전통지 하며, 교통비, 숙식비는 개별 부담임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7조 (계약의 해지)
그 오 - 휴러의 조스에 괴함 기메타타의 연연바치의 되기되 이나한 건이	제36조 (계약의 갱신과 거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	,
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제14조 (개시 승인)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 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필수설비/집기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상기 설비/집기 리스트는 점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상기 내역 중 거래상대방 권장품목을 지정 거래상대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 받을 경우 반 드시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 이 아닌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차액가맹금 수취 품목은 경영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귀하가 직접 자체조달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 시 차액가맹금 및 판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첨] 공급상품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공급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첨] 공급상품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공급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첨] 공급상품 리스트

구분	품목	규격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상품 및 원.부재료					

- ※ 상기의 제품 중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된 제품은 강제함
- ※ 상기 공급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첨] 판매상품 리스트

상품명	권장가격(원)	비고
물닭갈비(닭만)	12,000	변경시 사전통보
물닭갈비(닭+오징어)	13,000	
철판닭갈비(닭만)	12,000	"
철판닭갈비(닭+오징어)	13,000	
간장 오리불고기	14,000	"
매콤 오리불고기	14,000	
오징어불고기	13,000	"
통오징어숙회	13,000	"
쟁반막국수	9,000	"
오징어뭇국	5,000	"
모둠튀김	8,000	"
오징어튀김	5,000	"
새우튀김	5,000	"
계란찜	4,000	"
기본/치즈/무생채 볶음밥	2,000	"
사리추가(라면/쫄면/우동/당면/떡)	1,500	"
공깃밥	1,000	"
세트1	43,000	"
세트2	47,000	"
세트3	65,000	"

[※] 상기의 판매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있음